■ 이승한 전 협회장, 석탑산업훈장 수여

당 협회 전 회장(1996. 3~1992. 2)을 역임하고 현재 협회 고문인 이승한 박사가 제3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산재예방유공자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이승한 박사는 1964.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될 당시부터 1972. 9까지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 자문의로 근무하였고, 1976. 7부터 현재까지 요양급여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다. 1971. 10부터 1980. 2까지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산업재해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산재 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산재환자 보호는 물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힘썼으며, 1981. 3에는 WHO 산업보건교육 합동위원회 자문위원, 1981. 4부터 현재까지 WHO 산업보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1986. 12부터 2000. 2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를 역임하고 1987. 3부터 1999. 2까지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자 보호 및 노동관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1993. 12부터 1999. 12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6. 12부터 1999. 5까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외에도 이승한 박사는 35년이 넘는 기간동안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고, 항상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산재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널리 알려왔으며, 산재근로자에게 불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예방과 산재근로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여 온 공이 인정되어 이번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다.

■ 협회, 김홍갑 보건관리부장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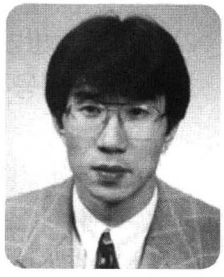

당 협회 충북산업보건센타 보건관리부 김홍갑 부장이 제3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포상하는 산재예방유공자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홍갑 부장은 1985년 협회에 입사한 이래 줄곧 영세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과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취약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 『심리상담』 전문교육 실시

당 협회의 『심리상담』전문교육과정이 지난 6월 8~10일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전문과정은 의사소통기법, 효율적인 자기원함을 이루는 방법,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자기원함 등 인간의 지각세계와 행동체계의 기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다.

■ 산업보건 세미나 개최 예정

당 협회는 제3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7월 3일 한국종합전시장(COEX) 4층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산업보건의 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산업보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주요 전략을 비롯한 산업보건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직장자가점검매뉴얼」제작 배포

당 협회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자가점검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하여 7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직장자가점검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실천해나가는 자료의 하나로서 직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작업관리자들이 손쉽게 이용하여 작업 및 환경상태를 상시 점검관리하고 직장내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장자가점검매뉴얼」을 작업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 알려드립니다.

■ 작기협,

•전문서적 「CHROMATOGRAPHY」,

•「유해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 (NIOSH Manual 0~Z)」번역서 배포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회장 이광묵)에서는 분석담당자에 대한 분석실력 배양과 내·외부 정도관리 등 분석값의 정확성·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원기관에 전문

참고서적 「CHROMATOGRAPHY」(오도석 著)와 「유해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NIOSH Manual O~Z)」 번역서를 배포하였다.

「CHROMATOGRAPHY」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요 이론, 기기 구조, 응용분야 등에 대해 저자의 20여년의 크로마토그래피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서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NIOSH Manual O~Z)」 번역서는 미국 산업보건국의 작업환경 시료포집 및 분석방법에 관한 Manual로서, 작기협이 지난 해 'A~D', 'E~N' 2권을 제작한데 이어 'O~Z' 권을 번역 발간한 것이다.

★ **직업병연구회**에서는 6월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직업병연구에 있어서의 직무-노출 매트릭스(JEM)'를 주제로 제24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알 림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내용

200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6,855호로 공포된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조는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호는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산업보건의로서 관계가 있는 3개의 조항만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시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중 진폐증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 학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료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료법에 의하여 등록사업장안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사업장안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이상의 법 조항을 보면 보건관리자가 당해 사업장 또는 학교에 개설된 부속의원에 속해 있으면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0년 2월 3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9호에 입법예고되어 있었는데 6월 23일에 개정 공포된 내용이다.

〈제공: 편집위원 이용호〉